북한 **여성 · 이동 인권** 실태

2016.11.

도 경 옥

임 예 준

이기태

홍 제 화

김인숙 이찬희 이다빈



북한 **여성 · 아동 인권** 실태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2016.11.

도경옥(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임예준(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기태(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홍제환(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보조연구원:김인숙·이찬희·이다빈)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I . 서론		01
Ⅱ.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	04
1. 북힌	t의 제2 · 3 · 4차 통합보고서(2016)	04
여성 탈북	2. 쟁점별 실태 에 대한 차별 6 여성에 대한 만연한 폭력 17 후 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벌 및 인권침해 23 한 여성건강 및 모성보건 29	06
Ⅲ. 북한	아동의 인권 실태	35
1. 북힌	·의 제5차 보고서(2016)	35
열악 교육	2. 쟁점별 실태 한 아동 보건 · 복지 37 아동교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47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학생 동원 52 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54	37
₩. 결론		59
제2 부록2】아	성차별철폐협약 관련 북한의 2·3·4차 통합보고서 주요내용 동권리협약 관련 북한의 3차 보고서 주요내용	63



북한은 2016년 4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1) 이는 북한이 당사국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보고서제출의무에 따른 것이다.2)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2002년 9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제2·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3) 한편,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이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 2월 최초보고서, 2003년 5월 제2차 보고서, 2007년 12월 제

¹⁾ UN Doc. CEDAW/C/PRK/2-4 (2016); UN Doc. CRC/C/PRK/5 (2016).

²⁾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8조 및 아동권리협약 제44조.

³⁾ 북한은 제2·3·4차 통합보고서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협약 이행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 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번에는 제5차 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4)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보고서의 경우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이 후 14년 만에 제출된 정기보고서이며,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의 경우에도 거의 10년 만에 제출된 보고서이므로. 이번 보고서들은 특 히 주목을 요한다.

여성 및 아동 관련 협약의 가입 및 비준과 이번 보고서 제출이 부 분적으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북한은 여성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5) 이러한 태도는 2009 년과 2014년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특정한 집단의 권리'라는 별도 의 항목 하에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다루었다.6) 특히 2014년 에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여성 및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 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2014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서 북한이 수용한 113개의 권고사항 중 여성 및 아동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권고사항이 전체의 1/4 정도를 차지하며, 취약계층 및 교육 관련 권고사항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1/3 정도에 이른다. 7) 한편, 북한 은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여섯들과 어린이들이 사회적 차별과 각종 폭 력의 희생물이 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나라의 꽃. 나라의 왕'으로

⁴⁾ 북한은 제2차 보고서에서 1995부터 2000년까지,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 지. 제5차 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협약 이행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⁵⁾ 북한은 1981년 9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과 「경 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전 지와 관련하여 1999년 12월, 후자와 관련하여 2002년 4월에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까 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⁶⁾ UN Doc. A/HRC/WG.6/6/PRK/1 (2009); UN Doc. A/HRC/WG.6/19/PRK/1 (2014).

⁷⁾ UN Doc. A/HRC/27/10 (2014); UN Doc. A/HRC/27/10/Add,1 (2014).

떠받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여성 및 아동 분야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8) 북한은 이번에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보고서와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 서도 북한의 여성과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주장과 그동안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북한 여성 및 아동의 인권 실태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번 보고서들에서 북한 당국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주장들이 실제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각각의 보고서의 분량이 적지않은 관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하고, 본문에서는 주요 사안별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북한 여성 및 아동의 인권 실태 조사방법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국제기구 자료, 관련 단행본 및 논문, 북한매체, 국내매체 등이 두루 활용되었다. 심층면접조사의 경우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면접을 실시한 후 그결과를 반영하였다.

⁸⁾ 예컨대, 『로동신문』 2016.6.1. 기사, 『조선중앙통신』 2016.6.4. 기사, 『로동신문』 2016.6.14. 기사, 『로동신문』 2016.8.5. 기사 등.



\prod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

1. 북한의 제2·3·4차 통합보고서(2016)

북한은 제2·3·4차 통합보고서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 여성들은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조국 번영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수행했다"고 자평하였다.9)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f)호와 제9조 2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결정, 2015년 11월 유엔에 통보했음을 강조했다.10)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5호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한 이래 법제도적으로나 실제에 있어 남녀평등을 보장해 왔고, 「사회주의헌법」과「가족법」에서 여성의 남성과 평등한 정치·사회 참여권과 가정생활에서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11)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고자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했으며, 제2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북한은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

⁹⁾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2,

¹⁰⁾ *Ibid.*, para, 7.

¹¹⁾ Ibid., paras. 9, 10.

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12) 한편, 동 조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차별'은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의 차별의 정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동 법에 따라 성평등 개념의 확산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했으며,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13) 이는 2005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부합하는 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완전히 수용하고, 간접차별의 의미와 범위 등 협약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북한의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14)

여성차별철폐협약 제3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을 통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차별의 개념을 수용하고, 여성의 사회정치적권리, 교육·문화·보건의 권리, 노동의 권리, 인신 및 재산의 권리, 결혼 및 가정의 권리와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동 법은 「북조선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형법」, 「가족법」, 「민사소송법」 등에 산재했던 여성 권리및 보호에 관한 선행 법령들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¹²⁾ *Ibid.*, para, 11,

¹³⁾ *Ibid.*, paras. 12, 13.

¹⁴⁾ UN Doc. CEDAW/C/PRK/CO/1 (2005), paras. 19, 20.



은 입법적 조치의 측면에서는 당사국의 의무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과 사법은 법을 기초로 행하여지는 만큼 본래 입법은 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 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아직까지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주요 쟁점별 실태

가 여성에 대한 차별

【 성역할의 정형화와 제한적 사회진출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5년 권고에서 북한의 여성 차별적인 성 역할에 대한 정형화된 태도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되 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특히 위원회는 여성을 가사 전담자로 인식하거나 여성의 특성에 기초하여 고용을 할당하는 등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형화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관해 북한 당국이 정형화된 성 역할에 대한 고정된 태도를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을 권고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의식개혁 캠페인을 포함한 교육적 조치 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 위원회는 특히 정치, 사법, 시민, 외교 분야의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

¹⁵⁾ *Ibid.*, paras. 35, 36.

며, 북한이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직에 여성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 북한은 이번 제2·3·4차 통합보고서를 통해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이라 한다)이 성역할의 정형화를 없애고, 인민위원회와 함께 성평등에 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활동하며, 이 밖에도 교육 캠페인, 행정적 및 법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했음을 강조했다. 17) 또한 기관 차원에서도 모든 부처에서의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을 찾아내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18)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여성권리보장법」에 여성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여성이 남성과 정치 및 공공생활에 있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19) 고용에 있어서도 2009년 각 직군별 여성고용 할당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2014년 노동부 지침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며,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

그런데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의 정치 참여 수준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각국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이다. 각국의 여성 의원비율을 비교해 놓은 국제의원연맹(IPU)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중

¹⁶⁾ *Ibid.*, paras. 43, 44.

¹⁷⁾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56.

¹⁸⁾ *Ibid.*, para, 58.

¹⁹⁾ *Ibid.*, paras, 75~83.

²⁰⁾ *Ibid.*, paras, 42~50.



여성은 112명으로 16.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21) 이는 조사 대상 191개국 중 11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북한은 이번 제2 · 3 · 4차 통 합보고서에서는 여성 대의원 비율을 20.2퍼센트로 제시하고 있는 데²²⁾.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여성 의원 비율 순위는 191개국 중 87위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인민회의 대의 원을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 고인민회의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 준의 실질적 권한은 갖지 못한 채. 핵심 권력기구인 노동당에서 결정 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노동당 주요 직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표로 삼 아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 다. 지난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에서 선 출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가 참가하였 는데, 이 가운데 여성은 315명으로 8.6퍼센트를 차지했다. 당대회에 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 129명과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06 명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위원 4명(3.1퍼센트), 후보위원 3명 (2.8퍼센트)에 불과하다. 23) 또 5월 9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 1차 전원회의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정치국 위원 19명, 정 치국 후보위원 9명은 모두 남성이다. 정리하면, 당에서 여성이 차지하 는 비율이 낮을뿐더러. 권력의 핵심부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낮아지

²¹⁾ Inter-Parliamentary Union(IPU),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Situation of 1st June 2015," (www.ipu.org/wmn-e/arc/classif010616.htm) (검색일: 2016.9.28.).

²²⁾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77.

²³⁾ 일부 새로 선출된 위원 및 후보위원의 경우, 아직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통계 수치에는 다소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기회 역시 제약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상세 보고서는 중앙 정부 관료 중 10퍼센트만이 여성임을 지적하고 있다. 24) 북한은 2002년 9월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적 영역의 여성간부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여성재판관 비율이 10퍼센트, 외무성 직원의 15퍼센트가 여성"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25), 이번 제2·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그 비율은 각각 11.9퍼센트와 16.5퍼센트로 10여 년 사이 불과 1~2퍼센트 개선되는 데에 그쳤다. 26)

문제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교육 기회에 있어서 남녀 사이에 차이가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성별취학률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성별 진학률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제출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는 대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34.4 퍼센트로 소개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음을 의미한다. 27) 그런데 이번 제2·3·4차통합보고서에서는 초·중등교육에 관한 통계는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대학진학률에 관해서는 높아졌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

²⁴⁾ UN Doc. A/HRC/25/CRP.1 (2014), para, 314.

²⁵⁾ UN Doc. CEDAW/C/PRK/1 (2002), para, 111.

²⁶⁾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89, 254.

²⁷⁾ UN Doc. CEDAW/C/PRK/1 (2002), para, 132,



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28) 이로 보아 지난 10여 년 사 이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성이 주로 비공식 부문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역시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 한에서는 일자리의 성별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남성은 공식 부문, 여성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경향이 뚜 렷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²⁹⁾ '고난의 행군' 이후 공장·기업소 가 자재 및 설비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생계유지에 턱 없이 부족한 임금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남성들은 처벌을 피 하기 위해 직장에 출근해야 했고. 여성들이 남성 대신 생계유지를 위 해 비공식 경제활동에 나서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은 거의 임 금을 받지 못한 채 공식 부문에 소속되고. 여성은 비공식 부문에 종 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패턴이 굳어진 것이다. 2013년 탈북한 한 남 성의 증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가정 운영하는 거 그저 90퍼센트는 여자가 다 해야 돼요. 왜 남자는 직장 안다니면 집지키고 직장 안다니면 잡아가니까 무서워서, 무직이라는 게 있 어가지고 그게 다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직장에 끌려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보수 노동하죠.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일하고 남자들 돈 못 벌고. 사회적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그저 여자가 다. 돈을 버는 것도 여자가 벌고."30)

²⁸⁾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99.

²⁹⁾ 장혜경·김화순.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I)』(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p.124.

³⁰⁾ 김혜영 외,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가족의식 및 문화 통합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총서 15-30-03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p.92,

물론 결혼 후에도 공식 직업을 계속 갖는 여성들도 있는데, 이들은 뇌물과 같은 부수입이 있거나 배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³¹⁾ 그리고 이마저도 주로 권력 있는 집안 출신 여성들이 혈연·혼인관계를 이용해 배치 받아 결혼 이후에도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²⁾

이처럼 여성이 주로 비공식 부문의 일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여성들은 많은 노동을 수행하여 가정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공식 부문으로부터는 그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극소수의 여성을 제외하면 여성 대부분은 사회적 지위 향상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이 비공식 부문에 집중되는 데에 따른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가두여성(전업주부)들은 비공식 경제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휴노동력으로 간주되어 사회봉사 및 농촌봉사 등에 동원되고 있다. 33) 또한 비공식 부문 여성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못한 채 불합리한 관행과 폭력 혹은 권력의 횡포에 노출되기 쉽다. 게다가 북한의 출산휴가와 탁아소 등의 모성보호 정책은 원칙적으로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점에서, 비공식 부문여성들은 모성보호 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34)

³¹⁾ 장혜경·김화순,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I)』, p.74.

³²⁾ 위의 책, p.73.

³³⁾ 이승윤·황은주·김유휘,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비판사회정책』 제48호 (2015), p.315.

³⁴⁾ 위의 글. p.316.



【 남성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 】

북한은 2002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고 정된 성역할 분담은 거의 제거되었으나 남성은 바깥주인. 여성은 안주 인이라 불리거나 큰일은 남성의 일. 잡다한 업무는 여성의 일로 여기 는 등의 관습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35) 북 한은 이번 제2·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여성권리보장법」이 채택된 이후에도 남성우위의 관습이 사회와 가정에 남아있다고 밝혔으며, 이 는 일반 대중이 국가 정책과 법에 대해 알지 못한 탓이며, 관습적인 고정관념과 태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6)

북한 당국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남존여비의 고정관념은 주민들의 인 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탈북한 50대 후반의 한 여 성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여자는 가 정적인 부분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가 간부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³⁷⁾ 이는 북한 기성세대에게 남존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2013년까지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한 30대 후반 남성의 다음 증언도 북한 주민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준다.

"북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게 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게 여자는 50퍼센트, 남자는 100퍼센트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여자 는 완전히 100퍼센트로 완성이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 축에 못 들어가는

³⁵⁾ UN Doc, CEDAW/C/PRK/1 (2002), para, 101,

³⁶⁾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53.

³⁷⁾ NKHR2015-000095 2015-05-12.

건데 그렇게 보는 거 있어요."38)

북한 사회의 가부장성은 부부의 일탈에 대한 대응 및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교양사업을 통해 남자는 외도를 할 수 있으므로 여자가 이를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고 주지시킨다고 한다. 39) 반면 아내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혼을 당한다고 한다. 심지어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여성의 외도를 이혼사유로 하라고 재판 관계자가 권하는 사례도 있다. 40)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시켜주느냐는 물음에 양강도 혜산시에 살다 2012년 탈북한 30대 초반 여성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어, 여자가 바람피운 건 이혼하는 거 같아요. 남자가 바람피우는 건 안되는데. … 남자가 바람피울 수 있다고 보는 거 같은데. … 아무래도 좀 남자를 이렇게 우대하는 게 있어요."⁴¹⁾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 가정의 가부장적 특성이 약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남존 여비 사상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하 지만,⁴²⁾ 관습적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 예전보다 덜하다는 사 람도 있으며,⁴³⁾ 남존여비 사상이나 경향은 별로 느끼지 못했고 최근

³⁸⁾ 김혜영 외.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가족의식 및 문화 통합방안 연구』, p.92.

³⁹⁾ 조정현 외, 『북한인권백서 2013』(서울: 통일연구원, 2013), p.328.

⁴⁰⁾ 위의 책, p.329.

⁴¹⁾ 북한이탈주민 ㅇㅇㅇ, 2012년 11월 5일, 서울에서 면접.

⁴²⁾ NKHR2016000117 2016-07-26; NKHR2016000123 2016-07-26



에는 남녀 구분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44) 이는 「여성권리보장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요인 때문으로 보기는 어 려우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여성이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가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해진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처럼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의 활동이 비공식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 어. 이것이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이중부담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5년 권고를 통해 북한여성이 가정에서 부 과된 의무로 사회생활의 시간이 부족하여 관리직을 선택하지 않는 등 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45) 이번 보고서에서 북 한은 남녀 성역할의 정형화를 극복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교육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남녀평등강화를 위한 임시특별조치로서 직군배치에 있어 여성을 고려하고. 직장 내 복지시설과 탁아소 설치 등을 의무화 하는 등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을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46)

⁴³⁾ NKHR2016000121 2016-07-26.

⁴⁴⁾ NKHR2016000136 2016-08-23.

⁴⁵⁾ UN Doc. CEDAW/C/PRK/1 (2002), paras. 27, 28.

⁴⁶⁾ UN Doc. CEDAW/C/PRK/2-4 (2016), paras. 45, 47, 55.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이 가정의 생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통일연구원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3.9퍼센트가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8.9퍼센트는 여성(아내)이 가족을 부양할경우에도 가사노동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답하였다. 47) 여성이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은 의례히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당연히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다보니, 여성의 경제활동 성과가 미진한 경우, 이것이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다음은 이에 관한 증언이다.

"(가정폭력이) 있죠. 여자가 장사 못하는 집들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을 …. 여자 구실 못한다고. "나가라. 나는 장사 잘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 그런 집들 …. 여자가 좀 활약해가지고 경제가 있는 집은 그다지 싸우지 않는데 …. 그런데 당장 먹을 형편이 안 되고 없는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많죠."48)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탈북한 50대 후반의 여성은 최근 북한에서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늦어 지는 이유가 "결혼하면 남자와 아이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걱정 때 문"임을 지적하고 있다.⁴⁹⁾

⁴⁷⁾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서울: 통일연구원, 2016), p.272.

⁴⁸⁾ 북한이탈주민 ㅇㅇㅇ,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증언자는 양강도 혜산시 출신의 50대 남 성으로 2010년 탈북했다.

⁴⁹⁾ NKHR2015000095 2015-05-12



경제활동과 가사노동만으로도 노동 부담이 큰데. 그 외의 시간 동 안도 북한 여성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여맹 조직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생활총화. 학습. 노력동원 등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까지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한 40대 초반 여 성은 탈북 직전 여맹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새벽동원은) 매일하죠. 뭐. 매일 같이. 그 다음에 거 3일이 멀다하게 어 디 사회동원 … 여맹원들이죠 나도 여맹생활 했는데 그 다음에 낮엔 낮 에 대로 또 … 동원 나가는데, 내 올 때는 어쨌든지 압니까, … 행진합니 다. 쭉 일터까지. 그래 가 갖고는 이런 공사장이죠. 집짓는. 거기 가서 세 면 포대를 낑낑 끌어다가 그 없는 힘에 쏟아 가지고 물을 부어 가지고, 자 갈하고 세면하고 모래하고 섞어 가지고. 이거 물 타고 이런 게 얼마나 힘 든지 모릅니다. … 낮에 뙤약볕에 쨍쨍 비쳐도 자기 과제 있으니까 자기 과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못하면 저녁 때까지라도 그거 해야 되니 까. 아무래도 해야 되는 거 그저, 후닥닥 하자하고 서로 죽기 살기로 하죠 뭐 "50)

2014년 탈북한 50대 초반의 여성은 농촌 동원, 철길 동원, 인민반 동원에 거의 날마다 참여하여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2 시부터 4~5시까지 일했으며, 빠질 경우에는 북한 돈 3,000원을 내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51) 2011년 탈북한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인민 반별 가두동원이 너무 잦아 "가두가두 끝이 없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 였으며, 주로 농촌동원, 도로닦기 등에 참여했는데 몇 십리를 걸어서 왕복해야 했고 노동 강도도 매우 높았다고 한다 52) 그러나 이에 대해

⁵⁰⁾ 북한이탈주민 ㅇㅇㅇ. 2012년 9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⁵¹⁾ NKHR2016000143 2016-08-23.

서는 아무런 보수도 주어지지 않았다.53)

나 여성에 대한 만연한 폭력

【 가정폭력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5년 권고에서 북한이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구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즉각적인 보호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가해자가 기소, 처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54) 북한은 2010년 제정한 「여성권리보장법」 제46조에서 "가정에서는 녀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정폭행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종업원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관할지역 또는 자기소속 공민들의 가정에서 가정폭행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가정폭행금지 및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형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실태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통일연구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⁵²⁾ NKHR2016000133 2016-08-09.

⁵³⁾ NKHR2016000148 2016-09-06

⁵⁴⁾ UN Doc. CEDAW/C/PRK/CO/1 (2005), paras. 37, 38.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응답자 중 81.2퍼센트가 가정폭력이 흔하다고 응답했을 만큼 가정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5)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인 여성들이 여전히 제대로 대응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여성은 이웃 에게조차 알리지 않으며, 신고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다. 북한 주민들 은 가정폭력을 신고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가정 폭력 신고를 망신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가정폭력의 원인을 여성이 제공한다는 식의 인식도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듯하다.

"(남편이 부인을 때리면) 그 집이 또 싸움할 일 있으니까 뭐. 맞을 일 있으 니까 맞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처럼 뭐 막 때리면 경찰에다 가 서 말하고, 이런 거 몰라요."56)

"모든 관계는, 폭력 관계에서는 여자들이 너무도 입이 못 되고, 남자들을 존 중 안 하기 때문에 얻어맞는 거지… 남자들만 결합 있는 게 아니야요 "57)

설령 보안소 등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일은 가정에서 처리하 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귀찮아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다는 점도 피해여성들이 가정폭력 신고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은 2015년 탈북한 20대 중반 여성의 증언이다.

"싸우잖아요 … 담당 보안원한테 혹시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면은 그

⁵⁵⁾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274.

⁵⁶⁾ 북한이탈주민 ㅇㅇㅇ. 2012년 11월 5일, 서울에서 면접, 증언자는 양강도 혜산시 출신의 30대 초 반 여성으로 2012년 탈북했다.

⁵⁷⁾ 북한이탈주민 ㅇㅇㅇ, 2012년 11월 1일, 서울에서 면접. 증언자는 함경남도 함흥시 출신의 50대 초반 여성으로 2012년 탈북했다.

들의 대답은 뻔하죠. 너희 가정 문제 너희들끼리 해결해. … 인민반장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인민반장이 보안원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 (법적인 조치나) 그런 거 없습니다."58)

여맹 역시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011년 탈북한 30대 초반 남성의 증언이다.

"여맹이 그거(신소) 뭐 … 안 해줘요. 해주는데 말이나 했다 집안에 망신이 나 되 보고서감이나 되는 거예요. 레포트 작성해 갖고 그걸 갖다 공개 시키면, 그 사람 더 망신시키는 거잖아. 더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59)

간혹 가정폭력을 신고하여 남편이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긴 하다. 예를 들어, 평안북도 정주시에 거주하다 2013년 탈북한 30대 한 여성은 2012년 1월경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50대 후반의 여성이 여맹, 리당 비서, 정주시 보안서에 수차례 신고하였고, 남편이 노동단련대에서 3개월을 지내게 되었던 사례를 증언한 바 있다. 60)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일로 보이며, 가정폭력에 의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빚어지지 않고서야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2010 년부터 2014년까지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⁵⁸⁾ NKHR2016000154 2016-09-06.

⁵⁹⁾ 북한이탈주민 ㅇㅇㅇ. 2012년 11월 1일. 서울에서 면접.

⁶⁰⁾ NKHR2014000188 2014-11-04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퍼센트가 이혼사례가 흔하다 고 할 만큼, 이혼이 예전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 이혼 사유로 경제력 (56.6퍼센트). 가정불화(17.1퍼센트)에 이어 폭력(12.7퍼센트)이 세 번 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61)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 혼하는 사례가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재판에 의한 이혼만 가능한데, 남편의 경 제적 무능력,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여성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대체로 뇌물을 주어야 받아들여진 다고 한다. 이혼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북한 사회가 지닌 남성중심성 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법적으로 결 혼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62)

【 성에 기초한 착취 및 폭력 】

북한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에 기초한 착 취 및 폭력은 「형법」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다뤄지며. 성적 착취 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폐적인 문화반입과 유포죄를 「형 법」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63)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손해배상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고 밝 혔다 64)

⁶¹⁾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5』(서울: 통일연구원, 2015), p.316.

⁶²⁾ NKHR2016000131 2016-08-09.

⁶³⁾ UN Doc. CEDAW/C/PRK/2-4 (2016), paras. 66~70.

⁶⁴⁾ Ibid., para, 71.

사실 성폭력은 은밀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확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몇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은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호받고, 피의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신고를 해도 피의자가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⁶⁵⁾ 오히려 신고하는 것이 망신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기피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⁶⁶⁾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으며,⁶⁷⁾ 신고를 하면 시집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의 앞길을 위해 신고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다.⁶⁸⁾

물론 피의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양강도 삼지연군에 거주하다 2014년 탈북한 30대 중반 여성은 2013년 여중생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공개재판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해당 남성은 노동교화형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증언자는 이와 같은 처벌이 가능했던 것은 피해자인 여중생의 아버지가 삼지연군 보안서 감찰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69) 이는 달리 해석하면, 이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

⁶⁵⁾ NKHR2016000143 2016-08-23,

⁶⁶⁾ NKHR2016000139 2016-08-23; NKHR2016000140 2016-08-23.

⁶⁷⁾ 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45 2016-08-23.

⁶⁸⁾ NKHR2016000148 2016-09-06

⁶⁹⁾ NKHR2014000120 2014-08-12



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지만,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들 이 성적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적인 경 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권력기관원들이 이들의 비법적 인 행동을 눈감아주는 조건 하에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 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기관원도 있다는 것이다. 장사를 통해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 가는 여성들로써는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저 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문제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이루 어지는가에 대해 물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공통적으로 그러한 교육 을 받은 바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여성 중 일부는 성폭력 행위를 경험 또는 목격하거나.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 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탈북한 20대 중반의 한 여성은 북한에서는 간 부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성폭력 행위를 하는 데. 이러한 행위들이 성폭행이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탈북하여 중국 에 머물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간부들에게 응하는 여자들이 잘 살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70) 이는 성폭 력 예방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 고 있다.

⁷⁰⁾ NKHR2014000157 2014-09-23.

다. 탈북 후 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벌 및 인권침해

【 인신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처벌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5년 권고를 통해 인신매매 등 착취에 노 출될 수 있는 취약여성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둔 특별한 빈 곤퇴치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 했다가 귀환한 여성이 그녀의 가족과 사회로 재통합되고.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71)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여성의 인신매매에 즉각 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여성이 이러한 폭 력에 취약하게 된 구조적 원인들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72) 북한은 국경출입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때문에 북한 여성들은 국 경을 넘기 위해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 하기도 한다.73) 이후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상당수의 북한 여성들 은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중국 남성에게 인계되었다고 한다. 74) 이들은 현지에서 결혼을 하고 생활하지만, 대 부분의 경우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다. 결혼생활 중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분상의 제약과 강제송환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적절한 보 호를 요청하거나 대응을 하지 못한다. 75)

⁷¹⁾ UN Doc. CEDAW/C/PRK/CO/1 (2005), para, 42.

⁷²⁾ UN Doc. A/HRC/25/63 (2014), para. 89(i).

⁷³⁾ NKHR2014000071 2014-06-17; NKHR201400083 2014-07-01; NKHR2015000043 2015-02-24; NKHR2015000072 2015-04-07.

⁷⁴⁾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p.358~361.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인신매매는 엄격히 처벌된다는 것만 강조하며,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해 취한 조 치나,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당국의 역할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비법월경을 했다 귀화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처벌 대신 교양 조치를 취하며, 관할 인민위원회가 가족과 사회에의 재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76) 그러나 실제로는 인신매매 피해여성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77) 이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이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가기 위해 인신매매에 응하였거나 자신이 인신매매된다는 사실 을 사전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기보다는 비법국경출입죄를 저지른 '범법자'로 간 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8)

2000년대에는 북한의 주장과 같이 인신매매로 중국에 간 뒤 자발 적 귀화한 여성의 경우 법적 처벌이 아닌 원인 취조 후 일주일 간 출 퇴근식 교육을 받았다거나. 자수한 경우 그냥 내보내거나 '무리처리'했 다는 증언도 있다. 79)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으며 비법월경의 경우 무조건 처벌한다는 증언이 대다수이다.80)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는 않는 경우에도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법자와 다름없

⁷⁵⁾ NKHR2013000210. 2014-04-01; NKHR2015000079 2015-05-12.

⁷⁶⁾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74,

⁷⁷⁾ NKHR2016000117 2016-07-26.

^{78) 2014}년 탈북한 40대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갔으므로 면책이 되지 않고, 비법 월경죄로 처벌받는다고 증언하였다. NKHR2016000148 2016-09-06.

⁷⁹⁾ NHK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29 2016-08-09; NKHR2016000143 2016-08-23

⁸⁰⁾ 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34 2016-08-09

는 대우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탈북한 40대 중반의 북한이탈주민은 탈북하던 해에 지인이 자발적으로 귀환했다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 엄마라고 있었는데, 중국에 와서 살다가 자식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돈 번 거 가지고 중국에서 도망쳐서 북한으로 도망쳐 왔대요. 밀수하던 여자니까 제 발로 자수하러 ○○ 보위부로 갔는데, 조사기관에서 너무 조사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3년 살았으면 365일, 3년 동안을 매일 매시간 총화 받아야 한대요.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 그래서 너무 이겨내지 못해서 창문을 깨고 도망쳤대요. 다시 중국으로, … 원래는 2007년도 김정일시대에는 자수자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2014년도지 않아요. 김정은 시대에는 용서하지 않는다. 말로는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면 자수한 자들에게 다 이렇게 그물 씌워놓고 취급한 다는 거지요."81)

일반적으로는 중국 거주 기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결정된다.82) 그러나 최근 탈북한 여성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강제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탈북한 40대 여성은 김정일 정권 시대에는 6개월 중국 거주후 귀환한 경우 처벌은 크게 없었다고 증언한다.83) 2014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2~3년 전에는 경한 경우 노동단련형 6개월을 받았으나, 현재는 중국에 "발만 붙이고 왔다" 해도 노동교화형 2~3년으로 처벌이 무거워졌다고 증언한다.84)

⁸¹⁾ NKHR2016000148 2016-09-06.

⁸²⁾ NKH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33 2016-08-09.

⁸³⁾ NKHR2016000145 2016-08-23

⁸⁴⁾ NKHR2016000123 2016-07-26



【 강제송환 및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중 가장 큰 문제는 강제송화 과정에서의 강제낙태와 조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처 우이다. 중국에서 거주하다 강제송환 된 여성이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 한 경우. 강제로 낙태시키는 관행이 있다. 2011년 탈북한 30대 초반 남성은 노동단련대에 배치받아 지도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험을 이 야기하면서, 북한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이 임신한 경우에는 유산 시키지 않았던 반면. 중국에서 임신한 수감자들은 약물을 주입해서 소 파(임신 중절)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85) 또한 2013년 탈북한 30대 후 반의 한 여성은 2013년 여름 양강도 대홍단군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어 있을 때. 동료 수감자 중에서 중국인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낙태수술 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한다^{.86)} 이외에도 구금시설에서 동료 수용자가 중국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받은 경우는 다수 확인되고 있다. 87)

임신 여성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자행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2014 년 탈북한 30대 초반의 한 여성은 2014년 1월 양강도 혜산시 도보위 부 구류장에 있을 당시. 한국으로 가다가 잡혀 강제송환된 24세 여성 이 임신 3개월이었음에도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 다. 88)

⁸⁵⁾ 북한이탈주민 ㅇㅇㅇ, 2012년 11월 1일, 서울에서 면접.

⁸⁶⁾ NKHR2014000141 2014-09-02.

⁸⁷⁾ NKHR2012000090 2013-04-30; NKHR2014000113 2014-08-12; NKHR2014000167 2014-10-07.

⁸⁸⁾ NKHR2014000203 2014-12-02

강제송환된 여성이 유산한 상태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과 폭력에 노출된 사례도 있다. 당시 40대 초반이던 이 여성은 2010년 중국에서 강제송환되어 청진집결소 가게 되었는데, 지속된 출혈 속에 임신 및 유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치료도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돈을 숨기고 있어 출혈이 계속된 거라며, 숨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도집결소 보안원으로부터 폭행을 계속 당하였으며,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했다. 결국 그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교화소로 바로 가지 못하고 구호소에 가게 되었다.89)

구금시설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 역시 확인되고 있다. 2014년 탈북한 30대 초반 여성은 2012년 12월 양강도 혜산시 비법월경자 집결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27세의 동료 수감자가 집결소 계호원에게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90)

강제송환되어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여성들에게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해 몸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검사라고 하는, 여성들이 치욕스럽게 느낄 뿐만 아니라 매우 비위생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강제송환 경험이 있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보위부 구류장과 보위부 집결소 등에서 이러한 검사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91) 2011년 탈북한 30대 초반 여성은 2011년 온성 보위부와 청진 집결소에서 경험한 자궁검사에 대해 다음과같이 증언하고 있다.

⁸⁹⁾ NKHR2016000149 2016-09-06.

⁹⁰⁾ NKHR2015000079 2015-04-21.

⁹¹⁾ NKHR2013000038 2013-02-19; NKHR2013000192 2013-10-17; NKHR2013000198 2013-10-29; NKHR 2013000218 2013-11-26; NKHR2013000227 2013-12-24.



"고무장갑 끼고 자궁에다 손을 넣는 겁니다. 거기서 와 졸도하는 줄 알았 어요. 그 다음에 그걸 옷을 지금 다 벗어 한 명. 한 명 올라가는데. 더욱 이 놀란 것은 그 이렇게 해서 넣지 않습니까. 자궁에다 손 넣어서 검열하 고. 그리고 그 뺀 장갑을 그냥 그 다음 사람 올라 누웠는데 그 사람이 벗 어 놓은 옷에다가 그거 쓱쓱 쓱쓱 문대고 다음 사람에다 또 집어넣어. 그 러니까 마지막 8번째 검열하는 사람은 그 7명의 균을 다 끌어안는 거죠. … 글쎄 위생하는 애를 어떻게 거기다 쑤셔 댔는지 글쎄 그러고 계속, 보 위부에서 그냥 검사가 끝나서 나올 때까지 계속 걔 출혈하고. 계속 그 피 를 흘렸습니다. … 위생대 안 줍니다."92)

대부분의 경우 여성에 대한 몸수색은 여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검사를 남성이 시행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2013년 탈북한 40대 중반의 여성은 강제송화되는 과 정에서 중국 도문에서 여성에 의해 비닐장갑으로 자궁검사를 당하고.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로 이송된 뒤 다시 여성에 의해 항문과 자궁 검사를 받았으며, 함경북도 길주군 보안서 구류장에 이관된 뒤에는 재 차 29세의 남성 계호책임자에게 나체로 자궁검사를 당하였다고 증언 하고 있다.93) 여성들이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찾는다는 명목 하에 북 한 조사기관들은 이처럼 자궁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발가벗긴 채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시킨다거나 밥을 먹여 용변을 보도록 한 후 검사하는 등의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94)

⁹²⁾ 북한이탈주민 ㅇㅇㅇ, 2012년 10월 5일, 서울에서 면접.

⁹³⁾ NKHR2013000218 2013-11-26.

⁹⁴⁾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p.347~348.

라. 열악한 여성건강 및 모성보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5년 권고를 통해 북한이 임신, 출산 및 재생산건강 프로그램에 여성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취한 조치들의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95) 북한은 이번 제 2 · 3 · 4차 통합보고서를 통해 여성건강 보호 및 모성보건 보장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적 조치로는 '공중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장애인보호법」. 「연로자보호법」. 「의료법」. 「의 약품관리법」 등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강 조했으며,96) 정책적으로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2010~ 2015), 여성 재생산건강을 위한 의료교육전략(2013~2015), 아동 및 모성 영양실조 통제에 관한 전략적 행동계획(2014~2018) 등을 수립 했음을 강조했다.97) 또한 2012년 평양 산부인과 산하 현대 유방암센 터를 설립하고. 2015년부터 8개월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등 의 구체적인 조치를 소개했다. 98) 관련 내용은 지난 2014년도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당시 제출한 국가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99) 그러나 실제 이러한 조치는 평양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효성 또 한 의문이다. 또한 공식 부문 여성들은 대체로 결혼 후 일을 그만두 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공식 부문에 주로 적용될 유급 육아휴직 제 도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⁹⁵⁾ UN Doc, CEDAW/C/PRK/CO/1 (2005), paras. 45, 46.

⁹⁶⁾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143,

⁹⁷⁾ Ibid. paras, 164, 165, 196.

⁹⁸⁾ *Ibid.* paras. 155, 161,

⁹⁹⁾ UN Doc. A/HRC/WG.5/19/PRK/1 (2014), paras. 91~95.



이하에서는 여성건강과 모성건강으로 나누어 관련 실태의 자세한 내 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여성건강 】

많은 북한여성들이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과중한 노동. 가족부양 책임 증대에 따른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상 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9월 북한 중앙통계국은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세계 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북한 주 민들을 대상으로 영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00) 이 중 여성에 대한 조사는 0~59개월의 자녀를 둔 15~49세의 가임기 여성 7.649명을 대삿으로 이루어졌으며.101)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와 상완위둘레(Mid-Upper Arm Circumference) 측정 등이 실시되었는데. 여성들의 건 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의 31.8 퍼센트. 30대 여성의 30.2퍼센트. 40대 여성의 38.7퍼센트가 빈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임기 모든 연령대에서 북한 여성의 빈 혈 유병률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대 여성의 25.2

¹⁰⁰⁾ 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은 UNICEF et al., "DPRK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UNICEF-WFP-WHO, 2013)과 윤소윤 외,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 비교." 『대한지 역사회영양학회지』 21(3) (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¹⁰¹⁾ 이 중 96.3퍼센트는 20~39세 여성이다. 또 조사대상 중 15~19세는 1명이어서 이하의 논의에서 는 10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퍼센트, 30대 여성의 21.4퍼센트, 40대 여성의 21.8퍼센트가 영양불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여성의 영양상태 또한 크게 나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열악한 위생환경도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부인성 질환을 앓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위생과 관련해 거론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여성들이 생리(위생)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통일연구원의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4퍼센트가 북한에서 생리 처리를 위해 '가제천'을 사용했다고 답하였으며, '헌옷'을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10.7퍼센트에 달했다. 반면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1.0퍼센트에 불과했다. 1020 북한에서 '대동산 위생대'가 생산되고 있고, 중국산 일회용 생리대도 수입되고 있지만, 이는 대체로 평양이나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여성들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03)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된 일상도 위생 악화와 그로 인한 질병 초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탈북한 40대 여성은 북한 여성들에게 부인과 질환이 많이 발 생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생활환경이 많이 어지러워서 그런 병도 생겼다고 생각돼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언제 뭐 위생을 지킬 수가 있어요? 샤워를 해본 적

¹⁰²⁾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5』, p.335.

¹⁰³⁾ 위의 책, pp.334~335.



이 너무 까마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저 먼지 팍 뒤집어쓰고 그저 하루 종일 나가 벌어서는 들어와 저녁에는 씻지도 않고 풀 쓰러져 자 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104)

여성들이 부인성 질환에 걸린 경우,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도 의문스럽다. 열악한 의료 환경 하에 있다 보니, 북한에서는 마약 류를 이용한, 전혀 검증되지 않은 형태의 의료 행위가, 심지어 의료인 을 통해서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여성건강에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5)

【 모성보건 】

모성보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모성사망률일 것이다. 북 한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02년 10만 명당 97명이었던 모성사망률 이 2012년 62.7명으로 감소되었었다고 밝혔다. 106) 그러나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6년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보 면, 2015년 기준 북한의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산모의 사망자수는 8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07) 북한이 발표한 내용과 세계은행의 통계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2016년 세계개발지수에서 2015년 한국의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¹⁰⁴⁾ 북한이탈주민 ㅇㅇㅇ. 2012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¹⁰⁵⁾ 예를 들어, 부인성 질환 치료에 빙두를 비롯한 마약류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확 인된다. 『뉴포커스』, 2016.8.22. 기사.

¹⁰⁶⁾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185.

¹⁰⁷⁾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6" (World Bank, 2016), p.72,

11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모성보건 수준이 열악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547명에 달하며, 저소득 국가의 평균이 495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모성보건이 세계 최저 수준은 아닌 듯하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산모의 직접 사인에 관해, 조산의 경우가 58.5퍼센트이며, 이 중 출혈로 인한 사망이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08)

북한 당국은 "우리나라에는 전국의 모든 도들에 현대적인 의료시설을 갖춘 산원들이 있으며 능력 있는 조산원들을 비롯한 보건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에 의해 녀성들과 갓난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철저히 담보되고 있다. 녀성들을 위한 재생산 건강의료봉사체계도 원만히 확립되여 있다."109)고 주장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2011년 기준 94퍼센트의 산모가 임신 중 진료를 4회 이상 받았으며, 이를 통해 모성사망률을 낮추었다고 자평했다.110) 하지만 산전—출산—산후관리를 위한 의료시스템은 모두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산전 검사의 경우, 유엔아동기금(UNICE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북한중앙통계국에서 실시한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세 가지 검사, 즉 혈압 측정, 혈액검사(매독과 중증 빈혈 등), 소변검사(세균뇨 및 단백뇨 등)를 모두받은 여성의 비율은 79퍼센트에 그치고 있다.111)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¹⁰⁸⁾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185.

^{109) 『}로동신문』, 2016.5.6. 기사.

¹¹⁰⁾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188.

¹¹¹⁾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CEF, 2009), p.64.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세 검사를 모두 받아본 여성의 비율은 30~50퍼센트에 불과하였다 112) 북한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한다면 최근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과 관련하여 북한은 숙련된 의료진에 의한 출산의 비율이 2002년 92.6퍼센트였던 것에 비해 2012년 99.1퍼센트로 높아졌다고 밝혔다.113) 또한 2011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도시 지역의 경우 출산 시 87퍼센트가, 농촌 지역의 경우 75퍼센트가 의사의 도움을 받았으 며, 이 중 의료시설에서의 출산이 87.9퍼센트이고, 12.1퍼센트의 경우 가정 또는 기타 장소에서 출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114) 실제 북한이 탈주민의 증언 등을 참고해 볼 때.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비율 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15) 그러나 농촌 지역의 경우 여전 히 집에서 조산원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116) 이러한 경우 자격증이 없는 산파의 도움을 받 는 경우가 많은데.117)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 출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과다출혈. 감염 등에 따른 모성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¹¹²⁾ 박상민 외, "북한 모자보건 현황과 효율적 지원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8월호, p.6.

¹¹³⁾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186.

¹¹⁴⁾ *Ibid*.

¹¹⁵⁾ NKHR2016000133 2016-08-09; NKHR2016000154 2016-09-06.

¹¹⁶⁾ NKHR2016000118 2016-07-26; NKHR2016000134 2016-08-09; NHKR2016000142 2016-08-23; NKHR2016000143 2016-08-23.

¹¹⁷⁾ NKHR2016000148 2016-09-06

\prod

북한 아동의 인권 실태

1. 북한의 제5차 보고서(2016)

북한은 제5차 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 아동들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아동 사랑 정책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였으며 그들의 복지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촉진되었다"고 자평하였다. 118) 그리고 이 기간 동안「아동권리보장법」제정 (2010년), 「보통교육법」제정(2011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 발포(2012년),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창설(2013년),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2014),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검토와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유관기관 협의회 및 회의 조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119) 또한, 2015년에는 각각의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존재하였던위원회들을 모두 통합하여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위원회를설립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아동권리보장법」및 아동권리협약의 요건들이 국가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충분히 통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20)

¹¹⁸⁾ UN Doc. CRC/C/PRK/5 (2016), para. 7.

¹¹⁹⁾ *Ibid.*, paras. 8~10, 17, 21, 25.



한편.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정의와는 달리 「아동권리보장법」에 서 아동의 연령을 "16살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21) 이 는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제도 하에서는 교육이 종료되는 나이가 16 세 또는 17세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22) 그러나 새로 우 12년제 의무교육제도 하에서는 교육이 종료되는 나이가 17세 또는 18세가 될 것이므로. 아동권리협약과 동일하게 아동의 정의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이는 2009년 아동권리위원회가 18세 미만의 모 든 아동이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부합되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북한의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124) 다만,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에서 노동 가능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가족법」에서 여성의 혼인가능연령을 17 세로 규정하는 등 헌법 및 여타 법령에서도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합치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 다. 남성의 혼인가능연령을 18세로 규정하여 남녀 혼인가능연령의 차 이를 두고 있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규정된 비차별원칙에도 어긋난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 전단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상의 권리를 실현 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 무를 지닌다.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에서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되어

¹²⁰⁾ *Ibid.*, paras. 22, 23,

¹²¹⁾ 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¹²²⁾ UN Doc. CRC/C/PRK/5 (2016), para, 27.

¹²³⁾ *Ibid.*, para, 28,

¹²⁴⁾ UN Doc. CRC/C/PRK/CO/4 (2009), para, 8.

있는 아동의 권리의 대부분을 반영하였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권리 및 자유는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타 시민적 권리 및 자유의 경우「아동권리보장법」뿐만 아니라「국적법」,「형사소송법」등 다른 법률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경우에도 입법적 조치의 측면에서는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사회는 아직까지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무르고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주요 쟁점별 실태

가. 열악한 아동 보건 · 복지

【 장애아동 】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 당국이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 온 다양한 조치들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면서,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25]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 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당국 차원의 조치를 자세

¹²⁵⁾ UN Doc. CRC/C/PRK/CO/4 (2009), para, 43.



히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아동권리보장법」에 규정된 바 와 같이 일반학교에 장애학생 특수학급을 설치하였고 시각장애 및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126) 그리고 아동권 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라 "장애아동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언급한 후, 특히 재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하였다. 127)

현재 북한 내에는 8개의 농아학교(삼봉, 시중, 함흥, 운전, 성천, 원산, 봉산, 봉천 농아학교)와 3개의 맹아학교(함흥, 대동, 봉천 맹아 학교)가 있다. 128) 북한 장애아동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 나.129) 장애인 특수학교가 11개에 불과하다는 사실 자체가 장애인 특

128)

구분	학교 명칭	위치
	삼봉농아학교	함경북도 온성군
	시중농아학교	자강도 시중군
	함흥농아학교	함경남도 함흥시
농아학교	운전농아학교	평안북도 운전군
유이릭표	성천농아학교	평안남도 성천군
	원산농아학교	강원도 원산시
	봉산농아학교	황해북도 봉산군
	봉천농아학교	황해남도 봉천군
맹아학교	함흥맹아학교	함경남도 함흥시
	대동맹아학교	평안남도 대동군
	봉천맹아학교	황해남도 봉천군

출처: 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 (http://www.greentreekorea.org, 검색일: 2016.9.26)

¹²⁶⁾ UN Doc. CRC/C/PRK/5 (2016), para, 137.

¹²⁷⁾ *Ibid.*, para, 141,

¹²⁹⁾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2011년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0세~15세 아동의 장애율은 0.9퍼센트라고 밝히고 있다. UN Doc. CRC/C/PRK/5 (2016), para. 135.

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말해준다. 특히, 양강도 지역에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또한, 특수학교가 일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과거 자신의 언니가 아이를 강원도 원산에 있는 농아학교에 보내려고 먼저 학교를 방문해 보았는데, 시설과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보내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30) 다만,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처럼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에 입국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운영 여부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득문하였다는 증언은 확보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2013년 3월 평양에 지능장애와 사지장애를 겪는 아동을 위주로 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과 회복 사업을 수행하는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을 건립하는 등 장애아동 훈련 및 재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훈련 및 재활의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위한 지역 기반 서비스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보건의료 및 영양 】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¹³⁰⁾ NKHR2013000224 2013-12-10.



서 만성 영양실조와 중증 영양실조 위험에 처한 아동들의 생존 및 발 달, 급성 호흡기 감염과 급성 설사와 같은 질환. 의약품 접근성 저하 등에 우려를 표하였다. [31] 그리고 높은 비율의 영양실조를 긴급한 문 제로서 지속적으로 다룰 것. 기초적인 아동의 건강 및 영양 등에 대 해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의 최 상의 건강수준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보조금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¹³²⁾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아동을 위한 보건의 료 서비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북한은 호담당의사에 의한 산전 산후 관리, 산전 2개월 산후 6개월로 임산부 유급휴가 확대 등 모자보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 들을 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3] 그러나 북한에서 호담당의사제도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며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다는 것이 북한이탈 주민들의 공통된 증언이다.134) 따라서 북한의 태아 또는 영아가 호담 당의사의 관리를 받는다는 북한 당국의 설명은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 가 있다. 그리고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산 전산후 유급휴가가 산전 60일. 산후 90일에서 산전 60일. 산후 180 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증언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만, 올해 초 탈북한 20대 중반의 남성 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급여가 워낙 적기

¹³¹⁾ UN Doc, CRC/C/PRK/CO/4 (2009), para, 44,

¹³²⁾ *Ibid.*, p. 45.

¹³³⁾ UN Doc. CRC/C/PRK/5 (2016), paras. 143, 165.

¹³⁴⁾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230.

때문에 '유급'이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¹³⁵⁾ 산전산후 유급휴가 확대는 비교적 최근인 2015년 6월에 이루어진 만큼, 실질적인 보장 여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백신 담당 의료인력을 지정하였고. 2007년 이래로 일반 백신의 경우 90퍼센트 이상 접종률을 달성하였 으며 호합백신과 홍역백신의 경우 2012년에는 99퍼센트 접종률을 달 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36) 아울러. 여러 약공장에서 수백 종류의 약물과 백신을 생산하여 기본적 약품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7] 그 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질병예 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8) 그러나 북한 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난의 악화로 의료보급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 지 못함에 따라 질병에 걸린 아동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 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례는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북한이탈주민은 영양실조. 고열. 폐렴 등을 앓던 농촌 아이들이 병원이 멀고 약을 구하지 못하 여 죽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9] 또 다른 북한이탈 주민은 농촌 지역 아동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실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¹³⁵⁾ NKHR2016000121 2016-07-26,

¹³⁶⁾ UN Doc. CRC/C/PRK/5 (2016), para, 152,

¹³⁷⁾ *Ibid.*, paras. 154, 157.

¹³⁸⁾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p.227, 228.

¹³⁹⁾ NKHR2016000131 2016-08-09



"병원에 진짜 약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나랑 아는 사이가 아니면 없다고 자른다 말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아프다 그래서 누가 약을 갖다 주고 봐준 다는 것 없습니다. 병원에는 진짜 약이라는 게 없고 약 나오는 것도 없고. 약이 있다 해도 장마당가서 사먹는데 그게 진짜 약도 아니다 말입니다. 페 니슐린에다 밀가루 섞어서 그래서 밀가루니까 소용도 없고 먹다보면 배탈 이 나서 소화가 안 되고 ... 농촌에서 일입니다 "140)

아동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평양과 지방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평양에 옥류아동병원 을 개원한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아동병원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병원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운영이 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양강도 혜산시에는 어린이 전용 병 원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가도 의 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41) 한편, 강원도 원산에 거주하다가 2014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강원도 소아병원의 경우 병원 시 설이 매우 좋았는데, 해당 병원이 유엔아동기금(UNICEF)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평양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 다 142)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아동 및 모성 영양실조 통제 전략 및 행동계획(2014~2018)을 수립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¹⁴³⁾ 북한은 2012년 유엔아동기금(UNICEF)를 비롯 한 국제기구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실시한 북한 아동 영양실태 조사

¹⁴⁰⁾ NKHR2016000132 2016-08-09.

¹⁴¹⁾ NKHR2016000136 2016-08-23.

¹⁴²⁾ NKHR2014000209 2014-12-16

¹⁴³⁾ UN Doc. CRC/C/PRK/5 (2016), para, 149,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당시 5세 미만 북한 아동의 15.2퍼센트가 저체중이고, 27.9퍼센트가 만성영양장애이며, 4퍼센트가 급성영양장 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144) 지난 2009년 조사에서는 5세 미만 북한 아동의 18.8퍼센트가 저체중이고. 32.4퍼센트가 만성영양장애이며. 5.2퍼센트가 급성영양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이 기간 동안 북한 아동의 영양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세계식량계획(WFP)은 2014년 조사 결과 5세 미만 북한 아동 3 명 중 1명. 그리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아동의 거의 절반 정도가 빈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45) 그리고 2015년에는 기구의 지원을 받는 탁아소의 6개월 이상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였는데. 25.4퍼센트가 발육부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6) 식량농 업기구(FAO)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간 편차도 상당한 것으 로 보인다. 식량농업기구는 『2015년 세계식량농업백서』에서 북한 농 촌의 저체중 아동의 비율을 26.7퍼센트로 추정하였고. 도시의 저체 중 아동의 비율을 13.2퍼센트로 추정하였다.147) 북한 농촌 지역의 저체중 아동 비율이 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공공보건정책과 의료종사자의 노력의 결과 1세 미만 영아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148) 구체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1세 미만 영

¹⁴⁴⁾ UNICEF et al., "DPRK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p.7.

¹⁴⁵⁾ WFP, "DPR Korea Country Brief" (WFP, 2016.8).

¹⁴⁶⁾ *Ibid*.

¹⁴⁷⁾ FAO,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FAO, 2015), p.92.

¹⁴⁸⁾ UN Doc. CRC/C/PRK/5 (2016), para, 53.



아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의 감소는 국제기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된다

연도	1세 미만 (1,000명당 사망자 수)	5세 미만 (1,000명당 사망자 수)
2008	25,8	32.4
2009	25.4	32,1
2010	24,8	31,3
2011	23,8	30,1
2012	22,7	28,7
2013	21,7	27,4
2014	20,7	26,1
2015	19.7	24,9

출처: http://www.childmortality.org (최종검색일: 2016.9.30)

특히. 2001년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이 40명, 5세 미만 아동 사망 률이 5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5년 사이에 사망률이 절반 이상 낮아 졌다.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은 아동 건강의 중요한 지표이며, 해당 국 가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을 나타낸다. 북한에서 영아 및 아동 사망률 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서 영아 및 아동 사망률 순위가 70~80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

연도	1세 미만 (1,000명당 사망자 수)	5세 미만 (1,000명당 사망자 수)
2008	19.3	26.7
2010	18.8	25.7
2012	16.7	22.7
2014	14.2	20.0

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생활수준 】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 전역에 만연한 가난과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식량의 이용가능성과 식수 및 위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아동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149)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보고서에서 「어린이보양교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탁아소와 유치원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50) 또한, 식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와 4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단위로 식량을 공급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2~3개의 방이 딸린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설명하였다. 151)

북한의 보육체계는 만 4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탁아소와 만 4세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는 유치원으로 나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탁아소 및 유치원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무료급식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에는 무료급식이 중단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중언하고 있다. 현재는 각자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고한다. 152) 직장 내 탁아소에 아이를 맡겼었다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식

¹⁴⁹⁾ UN Doc. CRC/C/PRK/CO/4 (2009), paras. 51, 52,

¹⁵⁰⁾ UN Doc. CRC/C/PRK/5 (2016), para. 178.

¹⁵¹⁾ *Ibid*.

¹⁵²⁾ NKHR2016000121 2016-07-26; NKHR2016000133 2016-08-09; 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45 2016-08-23; NKHR2016000151 2016-09-06; NKHR2016000154 2016-09-06.



사뿐만 아니라 기저귀. 선생님 월급까지도 모두 부모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153) 즉 당국은 사실상 장소만 제공하고 탁아소 및 유치원 운 영을 위한 비용 부담을 모두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임산부와 4세 미만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식량을 배급한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배급을 받 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권 력기관과 연관된 대상의 경우에는 특별히 배급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1년도에 조카가 출생했는데. 친 오빠가 보위부에 있다 보니 임산부와 아이에 대해 1년 정도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다. 154)

한편, 북한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우대는 존재한다. 하 지만 북한이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해 2~3개의 방이 딸린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약간의 돈이 지 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강도 혜산시에서 거주하다 2013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아이가 3명 이상일 경우 1인당 북한돈 200원씩 보 조금을 지급한다고 증언하였다. 155) 함경북도 경원군에 거주하다 2010 년 탈북한 한 여성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0원이 지급된다고 증 언하였다 156) 양강도 운흥군에 거주하다 2014년 탈북한 또 다른 여성 은 아이 다섯을 낳으면 모성 영웅 칭호를 부여하며. 아이가 3명 이상

¹⁵³⁾ NKHR2016000153 2016-09-06.

¹⁵⁴⁾ NKHR2016000154 2016-09-06.

¹⁵⁵⁾ NKHR2016000139 2016-08-23

¹⁵⁶⁾ NKHR2016000145 2016-08-23

일 경우 1달에 500원을 지급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157) 국가보조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최근 북한의 물가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금액은 거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여성은 세쌍둥이를 낳으면 주택을 준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2007년경 남포시에서 네쌍둥이가 태어났는데 2층짜리 아파트를 준 경우를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향후 북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실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나. 아동교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정책

【 과도한 정치사상교육 】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학교 커리큘럼에 아동권리협약 제29조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58][59]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부합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교육 프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¹⁵⁷⁾ NKHR2016000143 2016-08-23.

¹⁵⁸⁾ UN Doc. CRC/C/PRK/CO/4 (2009), para, 55.

¹⁵⁹⁾ 아동권리협약 제29조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의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여 학 생들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훈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60)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정치사상교육 이다. 16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역사'를 비롯한 김정은 일 가의 항일혁명역사 및 우상화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 각급 학교 학생 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162) 2013년 교육과정에서 정치사상교육 중 김 일성 관련 과목에 대한 학년별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초급중학교의 경 우 1학년과 2학년에서 각각 68시간씩 136시간, 고급중학교의 경우 1 학년 104시간, 2학년 56시간으로 160시간을 가르친다. 또한 김정일 관련 과목은 초급중학교의 경우 2학년과 3학년에서 각각 68시간씩 136시간. 고급중학교의 경우 2학년 56시간. 3학년 92시간으로 148시 간을 가르친다. 2013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신설된 김정은 관련 과목 은 초급중학교에서 전 학년 매주 1시간씩 총 102시간, 고급중학교에 서 전 학년 매주 1시간씩 총 81시간을 가르친다. 김정은 관련 교과는 김일성 관련 교과나 김정일 관련 교과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지만, 신 설교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비중이다. 163) 주요 학습 내용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 주체사상원리, 당정책, 혁명전통, 혁명 및 공산 주의 교양의 다섯 가지 범주이나 이 모두는 수령의 위대성을 인식하 게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164) 북한의 정치사상 교과는 세계에서 유례

¹⁶⁰⁾ UN Doc. CRC/C/PRK/5 (2016), para. 209.

¹⁶¹⁾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특성에 대해서는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 과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53~59.

¹⁶²⁾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249.

¹⁶³⁾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p.69.

¹⁶⁴⁾ 위의 책. pp.95. 96.

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현 최고지도자와 그의 가계를 우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⁵⁾

북한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이 정규 교과뿐만 아니라 '조선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의무적인 조직생활을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 같은 조직생활을 '사상단련의 용광로', '혁명교양의 학교'로 정의한다. 166)조선소년단은 만 7~13세의 청소년들이 가입하여 사상교양 활동과 조직 활동을 통해 유일사상을 학습하고 실천한다. 만 14세부터 30세까지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한다.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7)

【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 아동이 교육에 할당된 시간의 상당 부분을 축제 준비 등에할애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교과 외 활동으로 인하여 아동의 학습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68)

그러나 여전히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각종 정치행사나 체제선전에 동원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학생들은 선거와 같은 정치행사에 수시로 동원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가창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되며, 보통

¹⁶⁵⁾ 위의 책, p.97.

¹⁶⁶⁾ 김종수, "북한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3), p.52.

¹⁶⁷⁾ 위의 글, p.64.

¹⁶⁸⁾ UN Doc. CRC/C/PRK/CO/4 (2009), para, 53.



선거 한 달 전부터 주로 점심시간 및 방과 후 집에 가기 전에 종이로 만든 해바라기꽃을 들고 선거 관련 노래를 대열을 맞춰 부르고 다닌 다. 169) 그리고 군대 가는 사람들을 화송하는 행사시에도 종이로 만든 해바라기 꽃을 들고 거리에 나간다. 170) 학생들은 김정일, 김일성, 김 정은 생일 준비에도 동원되는데, 한 달 정도 오후마다 마을을 돌며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171) 이러한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은 지방보다는 평양에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학생들은 북한 당국의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에 따른 장 시간 연습으로 인해 육체적 부담이나 학습 방해 등의 고충을 심각하 게 느끼고 있다. 특히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3~4시간씩 연습을 진행 하는 가운데 쓰러지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172) 한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4.15 행사 때에는 집단체조 연습을 위해 2월부터 추운 날씨 속 에 2. 3개월 동안 주말까지도 연습을 하며, 가끔은 밤늦게까지 연습 을 한다고 증언하였다.¹⁷³⁾ 하지만 북한 학생들은 대체로 힘들어도 해 야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74) '동원의 일상화' 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랑 비슷하게 늘 하 는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175)

¹⁶⁹⁾ NKHR2016000121 2016-07-26

¹⁷⁰⁾ NKHR2016000152 2016-09-06.

¹⁷¹⁾ NKHR2016000133 2016-08-09.

¹⁷²⁾ NKHR2016000151 2016-09-06.

¹⁷³⁾ NKHR2016000123 2016-07-26.

¹⁷⁴⁾ NKHR2016000122 2016-07-26; NKHR2016000134 2016-08-09; NKHR2016000143 2016-08-23.

¹⁷⁵⁾ NKHR2016000152 2016-09-06

【 의무적 군사훈련 】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교육의 목표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의 군사적인 면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학교에서 아동의 조기 군사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76) 북한은 이번 제5차 보고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고급중학교의 교육 목표에는 "군사복무, 사회생활, 대학생활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건강한 심신(心身) 함양이 포함된다"고만 밝히고 있다.177)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고급 중학교 과정에서 '군사활동초보'라는 군사과목을 유지하고 있다. 2학년 과정에서는 1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3 학년 과정에서는 1주간 야외숙영을 통해 초보적인 군사활동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178)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사훈련에 서는 사격, 총기 분해 및 조립, 포복, 대열, 군규범 교육 등이 실시된 다고 하다 179)

¹⁷⁶⁾ UN Doc, CRC/C/PRK/CO/4 (2009), paras, 58, 59.

¹⁷⁷⁾ UN Doc. CRC/C/PRK/5 (2016), para. 198.

¹⁷⁸⁾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p.36.

¹⁷⁹⁾ NKHR2016000118 2016-07-26; NKHR2016000121 2016-07-26; NKHR2016000123 2016-07-26; NKHR 2016000139 2016-08-23,



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학생 동원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서 북한의 아동들이 직접교육의 목적을 훨씬 넘어서고 육체적 부담이 크게 요구되는 노동을 학교생활의 일부로서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학교생활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노동이 교육받을 권리와 아 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 다. 180)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제5차 보고서에서 이전 보고서에 서와 마찬가지로 아동노동은 오래 전에 근절되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181)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는 차원에서 교육과정에 현지 실습을 편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농장 및 공장을 방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182) 실제로 북한의 교육과정을 보면, 초급중학교의 경우 나무 심기, 그리고 고급중학교의 경우 나무심기와 생산노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처럼 공식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 외에도 방 과 후나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수시로 동원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에는 10일에 6~7일씩 매일같이 방과 후 노동에 동원되며, 특히 봄(김 매기, 모내기)과 가을(감자캐기, 강냉이 따기)에는 수업을 중단하고 한 달 정도 농촌작업에 동원된다고 한다. 183) 산림애호기간(3월)에는 학교 전체가 오전 수업을 끝내고 오후에 나무 심기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

¹⁸⁰⁾ UN Doc. CRC/C/PRK/CO/4 (2009), paras, 60, 61,

¹⁸¹⁾ UN Doc. CRC/C/PRK/5 (2016), para. 240.

¹⁸²⁾ Ibid., para. 203.

¹⁸³⁾ NKHR2016000139 2016-08-23; NKHR2016000145 2016-08-23; NKHR2016000150 2016-09-06; NKHR2016000152 2016-09-06.

다고 한다. 184) 또한 학생들은 모래나르기, 자갈나르기와 같은 건설작업에 동원되기도 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1년 무산군 아파트 건설 시 건설기계 및 건설인력 부족으로 학생들이 동원되어 자갈 옮기기, 모르타르 나르기 등에 학생들이 동원되었다고 증언하였다. 185) 이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2007년 무산중고등학교에서 운동장을 석비레로 포장하는 작업에도 학생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당시 작업내용은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석비레원산지에서 석비레를 파서 나르는 것이었는데, 석비레를 파는 작업 도중 땅이 무너져 학생 2명이 사망하였고. 이 일로 담임이 해직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동원되는 경우에는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한다고 한다. 186) 특히 봄에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지만, 그나마 가을에는 감자나 열매를 먹으니까 배는 고프지 않다고 한다. 187) 동원을 피하려고 학교에 안나오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188) 그런데 몸이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에 빠진 경우 학교에 돈을 바쳐야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189) 하지만 이와 같은 동원에도 일부 예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북한이탈주민은 학급 상위권 학생과 음악고 및 체육고 학생은 방과후 노동에서 제외된다고 증언하였다. 190) 담임에게 돈을 내고 모내기

¹⁸⁴⁾ NKHR2016000130 2016-08-09

¹⁸⁵⁾ NKHR2016000133 2016-08-09.

¹⁸⁶⁾ NKHR2016000131 2016-08-09.

¹⁸⁷⁾ NKHR2016000139 2016-08-23.

¹⁸⁸⁾ NKHR2016000150 2016-09-06.

¹⁸⁹⁾ NKHR2016000152 2016-09-06

¹⁹⁰⁾ NKHR2016000145 2016-08-23



전투 등의 동원에서 빠졌다는 증언들도 있다. 191)

라 아동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 꽃제비 】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서 이른바 '꽃제비'로 불리는 북한의 유랑 걸식 아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이 적절한 의식주,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기회 등을 제 공받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대해서는 회복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 한 바 있다 192)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꽃제비'에 대한 명시적인 언 급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연재해.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 해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좋은 생활환경 및 학습환경을 제공한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193)

꽃제비 증감 추세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 다소 엇갈 린다. 하지만 여전히 꽃제비들이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증언이다. 평 양과 같은 대도시보다는 국경 지대 및 지방의 역전이나 장마당에서 주로 목격된다고 한다. 북한은 1996년 이래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어 린이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4) 실제로 북한 당국은 이러한 꽃제비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는

¹⁹¹⁾ NKHR2016000117 2016-07-26; NKHR2016000119 2016-07-26.

¹⁹²⁾ UN Doc. CRC/C/PRK/CO/4 (2009), paras, 64, 65,

¹⁹³⁾ UN Doc. CRC/C/PRK/5 (2016), para, 109.

취지 아래 단속에 걸린 꽃제비들을 '구호소', '숙박소(여관)', '소년교양소', '방랑자 숙소', 구제소' 등으로 불리는 수용시설로 보낸다. [195] 하지만 일일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꽃제비 수가 많다는 증언들이 있다. [196] 그런데, 2016년 6월 탈북한 한 남성은 최근 김정은 지시로 애육원을 많이 건설하여 여기서 옷도 주고 밥도 준다고 하니 꽃제비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어 요즘은 꽃제비들을 거리에서 보기 힘들다고 증언하고 있다. [197] 한편, 2015년도에 한 언론에서는 함경북도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꽃제비들에 대한 외부의 비판시선을 의식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공화국이라고 선전하기 위하여 꽃제비들을 보이는 대로 집단 수용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198]

문제는 수용시설에 수용된 꽃제비들이 적절한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지 여부인데, 시설과 환경의 열악성, 규율의 엄격성 등으로 인하여 수용시설에서 도망치는 아이들이 많다는 증언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199]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시성후동에는 '유학원'이라 불리는 꽃제비 수용시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공부와 숙식을 제공하지만 규율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고 식량도 아주 소량만 지급된다고 한다. [200] 2010년에 함경북도 경성 구호소에

¹⁹⁴⁾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p.282,

¹⁹⁵⁾ 위의 책, p.282,

¹⁹⁶⁾ NKHR2016000121 2016-07-26; NKHR2016000153 2016-09-06.

¹⁹⁷⁾ NKHR2016000158 2016-09-20.

^{198) 『}데일리NK』, 2015.2.27, 기사,

¹⁹⁹⁾ NKHR2016000121 2016-07-26; NKHR2016000122 2016-07-26; 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57 2016-09-20.

²⁰⁰⁾ NKHR2016000139 2016-08-23; NKHR2016000140 2015-08-23



서 한 달 정도 있었다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그 곳의 실태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먹을 것이 없으니 아이들은 아침 7시 30분이면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때는 가을이니까 남의 집 감자의 이삭을 주워옵디다. … 대부분 오전 11시 에는 들어오는데 한 알도 못 주워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들은 밥이 없습니 다. … 당국 차원에서 나오는 식량은 모두 관리성원들(남자 2명, 여자 3명) 이 차지하고, 아이들은 매끼 감자만 삶아 먹입니다. … 아이들이 거의 다 영양실조입니다 "201)

북한의 꽃제비 수용시설에서는 직원에 의한 폭력 및 성폭행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방랑자 숙소' 수용 경험이 있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처음 입소하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몽둥이로 자신 을 때렸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202) 그리고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좀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들어오면 반장한테 불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꽃제비 수용시설에서 직원의 폭행 및 성폭행 때문에 원생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203)

【 탈북 후 귀화하거나 강제송화된 아동에 대한 처우 】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제3 ·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²⁰¹⁾ NKHR2016000149 2016-09-06.

²⁰²⁾ NKHR2016000132 2016-08-09.

²⁰³⁾ NKHR2016000139 2016-08-23

서 탈북 후 귀환하거나 강제송환된 아동이 가혹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18세 미만의 사람은 적절한 허가 없이 영토를 떠난 것에 대해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204) 이에 대해 북한은 이번 제5차 보고서에서 "불법월경하였다가 귀환한 아동들은 교양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5) 즉, 인민보안부서는 불법월경의 동기와 목적을 조사한 다음, 「아동권리보장법」, 「출입국법」, 「형법」등의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법에 대한 준수를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206) 그리고해당 학교는 그런 아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학교생활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며, 관할 인민위원회는 그러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의 부모들과계속 접촉한다고 설명하였다. 207)

그동안 중국에서 송환되는 아동들은 취조 과정에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며 구금 중에는 구타, 중노동, 배고픔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208) 또한, 아동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에 아동이 수용되어 구타와 강제노동에 시달린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209) 일례로, 2013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2011년 자강도 도 집결소 수용 당시 15살짜리 여자아이가 도강죄로 수용되어 있었는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

²⁰⁴⁾ UN Doc. CRC/C/PRK/CO/4 (2009), paras. 56, 57.

²⁰⁵⁾ UN Doc. CRC/C/PRK/5 (2016), para, 239.

²⁰⁶⁾ Ibid.

²⁰⁷⁾ Ibid.

²⁰⁸⁾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5』, pp.348, 349.

²⁰⁹⁾ 위의 책. pp.348, 349.

고 성인과 똑같은 노동 강도로 일하였다고 한다. 210) 2016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가을 16살 아이가 부모님 사망 이후 중국에 인신매매로 가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강제송환되었고 보위 부 조사 도중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211) 그런데 다 른 한편으로는 탈북 후 송화된 아동이 교양 조치만 받고 풀려났다는 증언들도 다수 수집되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당시 17살이던 남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탈북을 하였다가 강제송환되었는데 어머니는 노동교화형 3년을 선고받은 반면 남동생은 미성년이라서 보름 정도 교육을 받고 풀려났다고 증언하였다. 212) 하지만 이후에 계속 인민반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들도 탈북 후 강제송환된 미성년자들이 교양 처리만 받고 풀려났다고 증언하고 있다 213) 미성 년자는 성인과 같이 구류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9.27 상무'로 보내 진다는 증언도 있다. 214) 관련 증언들이 엇갈리는 만큼, 탈북 후 귀환 하거나 강제송환된 아동 관련 사건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지속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²¹⁰⁾ NKHR2013000018 2013-01-22.

²¹¹⁾ NKHR2016000121 2016-07-26.

²¹²⁾ NKHR2016000131 2016-08-09.

²¹³⁾ NKHR2016000112 2016-07-26; NKHR2016000123 2016-07-26.

²¹⁴⁾ NKHR2016000143 2016-08-23

<u>IV</u>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2016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 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여성 및 아동 인권 개선 촉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북한 여성 및 아동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북한은 보고서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 여성은 성역할의 정형화와 제한적인 사회진출, 남성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 시장화이후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 여성은 가정폭력과 사회에서의성에 기초한 착취 및 폭력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러한 폭력에 대해보호를 받거나 이후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중 가장 큰 문제는 탈북 여성의 강제송환 과정에서의 강제낙태와 조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이다. 그리고 국경출입의 자



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은 조직적인 인신매매의 피해자 가 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중국에서 결혼을 하고 생활하지만. 현지에 서의 신분상의 제약과 강제송화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 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한편, 북한 여 성들의 경우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 가족의 생계유지 를 위한 과중한 노동, 가족부양 책임 증대에 따른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해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악한 위 생환경 역시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모성보건과 관련해서는 모성사망률의 감소와 의료 기관에서의 출산율 증가 등 긍 정적인 변화도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열악한 의료시설과 전문적이지 않은 산전·산후 조치로 인해 모성보건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북한은 보고서에서 아동의 보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다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러한 조치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그러 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와 영양상태의 경우 평양과 지방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 편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교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의 교육정책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개선권고 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의 목 적을 넘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학생 동원도 계속 이루어 지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 협받고 있다. 여전히 꽃제비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아동에 대한 비인도적인 대우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다만.

예방접종률의 향상, 1세 미만 영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 아동 관련 시설의 확대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이같은 변화는 북한 당국의 조치, 시장과 사경제의 확산, 국제기구 및 NGO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조사에서는 매우 미미하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례, 탈북 후 송환된 아동에 대한 교양 처리 후 귀가 조치 사례도 수집되었는데, 향후 관련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협약 들에 규정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 적 조치와 기타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의 이행 및 준수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 협약들에 규정된 구체적인 권리의 신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다만, 북한의 경제여건상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등 사회권의 신 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협약들에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제4조 후단에서 "경제 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 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적 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규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 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 적. 기술적인 국제적 지원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자원



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등 사회권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해 서는 국제적 협력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당사국에 부과되어 있다. 지 원할 위치에 있는 다른 당사국들 또한 상기 국제적 협력에 관한 규정 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여성차별철폐협약 관련 북한의 제2·3·4차 통합보고서 주요내용

조문	주요 이행 현황	
여성치별의 정의 (제1조)	-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협약상 차별에 대한 정의를 국내법에 수용	
	- 성평등 개념 확산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차별철폐의 의무 (제2조)	 남녀평등과 반차별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는 기족법, 노동법, 여성권리보장법을 통해 보장 	
	- 여성 차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2005년 제정한 손해배상 법, 신소청원법을 통해 보장	
	- 법집행이 여성의 존엄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육 을 강화	
	- 2011년 보통교육법에 따라 12년 의무교육 시행	
	- 2010년 노동보호법을 통해 근로여성을 보호하고, 2015년 노동법 및 여성권리보장법을 수정해 출산휴기를 150일에서 240일로 연장	
여성의	- 상속법에 따라 여성에게도 상속에 관한 권리를 모두 인정	
발전 (제3조)	 기타 사회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연로자보호법, 장애인보호법, 손해배상법 등을 통해 여성의 발전권 보장 	
	- 인민위원회가 여성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	
	 북한민주여성연맹이 여성 발전에 대한 권고안을 기관에 제출, 여성의 권리향유 실태에 관한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 	
남녀평등	- 2009년 각 직군별 여성고용 할당에 대한 지침 마련	
강화를 위한	- 고용에 있어 국가기관은 20~25퍼센트 이상의 여성 비율 유지	
임시특별조치 (제4조) 	- 직군배치 기준에 있어 여성 고려	

KINII
W ((1)

	 복지시설, 직장 내 탁이소 설치 등을 규정 2014년 노동부 지침에서 다수 자녀를 둔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게 하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가장 중점적으로 배려하도록 규정 2015년 7월 노동규칙훈련을 내각 결정 59로 채택, 유해노동에 있어여성, 신체적으로 허약자와, 노약자를 배려하도록 규정 여성은 양육, 병가 등으로 일시적 사임 허용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성역할의 분담과 정형화 (제5조)	 여맹은 성평등 의식에 대한 조사 실시 여맹은 여성 성역할 분담과 정형화를 없애고, 인민위원회와 함께 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 관련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수행 교육 캠페인 강화, 행정적, 법적 제재 조치 강화 	
여성 착취 (제6조)	 형법에서 여성의 성 착취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형법 제249조 매음 죄, 제279조 강간죄, 제281조 미성인성교죄) 여성착취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 제183조는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처벌 여성권리보장법은 형법에 따라 매음행위를 한 자, 조직하였거나 조장하였거나 강박한 자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보장과 구제, 배상법 마련 	
정치 및 공공 생활 (제7조)	 헌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여성권리보장법을 통해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 국가행정에 참여할 권리 보장 2009년 12월 채택된 내각결정으로 정부기관에서의 여성 비율 보장 	
국제적 대표성 및 참여 (제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외무성, 대외경제성 등 모든 공적 영역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활동 외교, 국제회의 참석, 국제기구 대표 등은 모두 능력을 기초로 선발 하며, 국제적 활동을 하는 기관에서 여성은 차별 없이 활동 	

국적 (제9조)	 여성은 국적취득, 변경, 유지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이는 국적법과 여성권리보장법에 따라 보장 여성은 자녀의 국적결정에 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국적법에 따라 보장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향유 		
교육 (제10조)	- 헌법 제73조는 모든 공민은 진보적인 교육제도 덕분에 교육권을 완전히 향유하고 있다고 명시		
	- 여성권리보장법 제18조 및 제19조는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의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입학, 진학, 졸업배치에서 남녀평등권 보장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 2009년부터 텔레교육 시스템 도입		
	- 여맹은 어머니학교를 통해, 기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헌법, 노동법, 여성권리보장법과 기타 관련법에 의해 여성의 노동의 권리, 취업기회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		
	 직업배치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였으며, 노동성은 이에 따라 기술적인 지식, 건강상태, 성별, 나이 등을 직업배치에 고려하며, 직장배치에 있어 차별적 관행은 엄격히 금지 		
	- 2011년 매대 사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장미당에서의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		
고용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확립된 관행임		
(제11조)	- 임금에 있어 부당한 이득이 계산될 경우, 형법 제180조에 의해 처벌		
	- 2010년 노동보호법 채택하고, 노동보호규칙을 대폭 개정하여 여성의 노동 환경에서의 보호 관련 규정을 강화		
	- 노동보호규칙에서 여성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을 금지하고, 작업 장에 여성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도록 규정		
	- 노동성은 노동보호규칙 및 관련법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		
	- 특히 여성에게 금지된 작업을 시킨 경우 형법 제182조에 의해 처벌		
·			

1	K (M)

	 사회보장법, 이행규칙, 사회보험에 관한 규칙에 의해 사회보장 2014년 2015년에 평양 및 강원도에 양육소, 탁이소 설립, 평양에 양로원 설립함
	 헌법은 모든 공민에 대한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 여성권리 보장법은 치료받을 권리에 대해 보장
	 공중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장애인보호법, 연로자보호법, 전염병예방법, 의료법, 공중보건법, 자연보호법, 식료품위생법, 의약품관리법 등에서 여성 건강 보호를 규정
	– 2012년 평양 산부인과 산하 현대 유방암센터 설립
	— 여성 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을 위해 2015년 지방, 군, 면단위 병원에 가정상담과 조직
	 2006년 국가 모성 및 아동 질병관리 국가조정위원회가 비상설적으로 보건성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모성건강에 관한 기술 협력그룹 조직
의료서비스 접근에서의	- 2015년부터 8개월간의 유급 육아휴직 도입
평등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2010∼2015)
(제12조)	 여성 재생산건강을 위한 의료교육전략(2013~2015) 수립: 모성건강 증진을 위해 자궁암 예방 및 치료, 안전한 낙태 및 청소년 모성을 위한 전략 마련
	- 산부인과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2006, 여성 건강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2007, 조산 및 신생아 응급 훈련 모듈(표준) 2012 개발 및 배포
	- 2010년 호담당의사를 위한 훈련모듈(표준) 개발
	- 이동 및 모성 영양실조 통제 전략 및 행동계획(2014~2018) 수립
	 낙태는 산모의 생명이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하거나, 태아 기형인 경우 여성의 요구에 따라 시행
	* 2011년 기혼여성 낙태 비율 : 9.9/1000
사회 · 경제적 혜택 (제13조)	여성권리보장법에 의해 보장기혼여성은 남편과 가족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권 향유
(제13소)	

농촌여성 보호 (제14조)	 여성권리보장법에 명시 농촌여성의 보건 및 사회보장과 관련, 2012년 도입된 하이텍—텔레 메디신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킴 		
법 앞의 평등과 민사에서의 평등 (제15조)	 헌법에 법 앞의 평등 명시 모든 민사문제의 기초인 소유권에 있어 남녀평등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여성권리보장법 등에 의해 여성의 권리 보호 형소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에 대한 형 집행은 출산 전 3개월 출산후 7개월까지 정지 민소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이나 1살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이혼 소송은 기각 		
혼인 및 가족법에서의 평등 (제16조)	 혼인에 대한 권리는 헌법, 가족법, 여성권리보장법에 따라 남녀 평등하게 보장 미성년 결혼 및 중혼 금지 혼인소멸과 관련 권리와 책임, 이혼절차는 민소법에서 규정 양육의 의무는 가족법에서 규정 이혼 시 양육, 친권 지정은 가족법에 의해 규율 재산권은 남녀 평등하게 인정 		



부록 2 아동권리협약 관련 북한의 제5차 보고서 주요내용

영역	조문	주요 이행 현황
일반원칙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2조)	2014년 평양 육아원 및 애육원준공, 2015년 원산 육아원 및 애육원 준공
	최선의 이익 (제3조)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한 투자 증대, 교육 분야 지원 확대
	생명 · 생존 · 발달권 (제6조)	 보건발전 중기 전략계획(2010~2015), 신종 말라리아 퇴치 전략계획(2014~2017), 결핵 퇴치 전략계획(2014~2017) 등 실시 공공보건정책의 결과 아동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
	견해를 존중받을 권리 (제12조)	- 이동의 신소청원 보장에 특별한 주의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출생신고와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 (제7조)	- 국적법, 아동권리보장법 등에서 보장
	신분을 유지할 권리 (제8조)	- 국적법, 이동권리보장법, 가족법 등 에서 보장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3조)	이동권리보장법에 명시조선소년단의 다양한 활동연간 평균 8백 5십만 권 정도의 이동 출판물 발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4조)	- 사회주의헌법에 명시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5조)	- 사회주의헌법에 명시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사회주의헌법, 아동권리보장법, 형사 소송법 등에서 보장
	정보에 대한 접근 (제17조)	이동권리보장법, 교육법 등에서 보장평양 및 지방 대부분의 학교에 인트 라넷 구축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a))	형사소송법, 아동권리보장법, 신소청 원법 등에서 보장체벌 관련 인식고양 세미나 정기적 개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부모의 지도 및 이동의 능력발달 (제5조)	- 아동권리보장법에 명시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9조)	아동권리보장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장부모가 체포, 구속된 경우 정보 제공가정파탄을 막기 위한 조치
	가족의 결합 (제10조)	- 적절하게 발행된 여행증 제시 시 출 입국 보장
	불법해외이송 및 미귀환 (제11조)	- 형법상 '어린이훔친 죄'등에 따라 처벌
	부모의 책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이동권리보장법, 가족법 등에서 보장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제20조)	가족법상의 후견제도자연재해,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해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입양 (제21조)	- 기 족 법상의 입양제도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제25조)	이동권리보장법, 가족법에서 보장교육위원회, 보건성, 지방인민위원회의 조사부에 이한 정기조사		
아동양육비의 회부 (제27조 제4항)	- 가족법, 아동권리보장법에서 보장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9조),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 (제39조)	- 형법상 '학대괄시죄', '어린이보호 책임회피죄', '미성인성교죄'로 처벌		
장애이동 (제23조)	 ─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에서 보장 ─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 활동 ─ 장애 관련 외국 출판물 및 DVD 번역 판 배포 ─ 2011년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0세~15세 아동의 장애율은 0.9퍼센트) ─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 수화 관련 워크샵 및 교육 실시 ─ 종합재활치료센터 문수기능회복원 개원 		
	(제20조) 입양 (제21조)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제25조) 이동양육비의 회부 (제27조 제4항)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9조), 신체적 ·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 (제39조)		

- 인민보건법에 의한 보장 - 호담당의사에 의한 산전산후 관리 - 어린이 질병 통합 관리(IMCI) 확대 전략(2005~2020) - 2013년 평양 옥류아동병원 개원 - 아동 및 모성 영양실조 통제 전략 및 행동계획(2014~2018) 수립 및 1,000일 프로그램' 명시 - 백신 담당 의료인력 지정 - 2007년 이래로 일반 백신 접종률은 90퍼센트 이상 달성. 혼합백신과 홍역백신의 경우 2012년에는 99퍼센트 접종률 달성 - 도시와 농촌 간. 평지와 산간 간 격차 완화 노력 - 여러 약공장에서 수백 종류의 약물과 백신을 생산하여 기본적 약품수요 충족 - 2015년 6월부터 산전 2개월 산후 6개월 유급휴가 도입 - 재생산건강전략(2011~2015) 실시 - UNFPA, UNICEF의 지원 하에 모성 유아 건강 관련 다양한 조사 실시
- 2014년과 2015년에 내각, 보건성, 교육위원회, 각급 인민위원회에 고 이들을 위한 특별부서 설치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한 보장임산부, 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단위로 식량 공급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교육 · 여가 · 문화활동		 국내외 교육 동향을 고려하여 전반 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 발포
	교육 (제28조)	- 2015년에 각급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매우 싼 가격으로 새로운 교복과 물자 제공
		2014년에 교육여건의 급진적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전 략(2015~2032) 채택
		- 학교 출석률 증대 노력을 통하여 최 근에는 출석률이 98퍼센트 이상까 지 증가
		- 노동교육을 위한 현지실습(농촌, 건 설현장 지원)
	교육의 목적 (제29조) - 자주적인 시상의식 및 창조적 촉진이라는 교육 목표를 위해 내용 개편	
	여가 · 오락 · 문화활동 (제31조)	- 아동권리보장법에 의한 보장
		-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 미림 승마클럽 등 현대적 스포츠·문화 시설 완공
		- 대동문영화관 개축, 대성산 놀이공원 등 준공
특별보호조치	난민이동 (제22조)	- 사회주의헌법, 이동권리보장법, 어린 이보양교육법 등에서 규정
	무력분쟁으로부터 보호 (제38조)	- 아동 징병은 법에 따라 금지
	소년시법 (제40조)	- 소년사건의 경우 수사, 예심, 기소, 재판 전 단계에 걸쳐 전담 공무원이 취급

	 이동권리보장법 등에 따라 14세에 이르지 못한 아동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금지, 14세 이상 17세 미만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적 으로 사회교양처분 적용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a))	형법상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형 선고 금지아동에 대해서는 종신형 비부과
신체적 ·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 (제39조)	- 강제송환 아동에 대해서는 교양처분 적용
아동노동을 비롯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 아동노동은 70년 전 폐지
마약 (제33조)	- 형법상 마약 제조, 사용, 밀수밀매 처벌 규정
성적 착취 및 학대 (제34조)	- 형법상 '강간죄',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미성 인성교죄'로 처벌